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

2015회계연도  
기성회회계 예산 편성지침

---

2015. 3

# I. 2015년도 재정운용 여건

## 1. 대내·외 여건

-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등에 따른 내수의 점진적 개선
  -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의 본격 추진 등으로 성장동력이 점차 강화될 전망
  - 다만,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세계경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등록금 인상시 교육부의 행·재정적 제재
  - 국가장학금 II 유형 미지원
  -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시 불이익 등
  
- 반값 등록금 이슈와 등록금 반환소송
  - 반값 등록금의 사회적인 이슈 지속
  - 서울대 등 8개 대학 등록금 반환 상고심 진행

## 2. 재정운용 여건

### 1. 세입·세출

- 세입은 기성회비 미징수로 세입 대폭 감소
  - 2015회계연도부터 기성회비 폐지로 세입규모 대폭 감소

-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하였으나, 인건비 및 공공요금 증가 등으로 이월금 대폭 감소

※ '09 ~ '11, 13년 동결, '12년 5.6%인하

-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감소

#### 세출은 인건비 인상으로 증가 예상

- 기성회직원의 승진 및 호봉 승급 등으로 인건비 상승

## 2 재정수지

####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 회비수입 폐지에 따른 인건비 최우선 배정
- 낭비성, 일회성 행사 지양으로 대학 구성원의 예산절감노력 고취

## 표. 201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 1 예산편성 기본 방향

#### 1. 회비수입 폐지에 따른 재정축소

-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기성회비 미징수에 따라 재정 축소

#### 2. 대학회계 도입에 따른 기성회 재원 직원들의 신분보장 최우선적 보장

- 기성회 재원 직원들의 인건비 최우선 편성

####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 각종 수당 편법 신설 또는 과다 편성 금지, 기타 부당 집행사례 등

### 2 예산편성 기본지침

#### 1 세입부문

##### 회 비

- 2015회계연도부터 기성회비 징수 폐지

\* 근거법령 :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2015.3.13. 공포)

이월금

- 전년대비 세계잉여금 감소('13 : 71억원 → '14 : 10억원)

보조금

- 2014회계연도 기성회회계 편성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이월금만 계상

잡수입

- 이자 수입, 과년도 수입, 타 회계의 공공요금 부담금, 기타수입 등 계상

수입대체경비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공개강좌수강료, 생활관비, 어학강좌, 평생교육강좌 등 계상

**2 세출부문**

- 세출예산 편성기준 : 2015. 3. 1 현원
-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성회를 재원으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봉급, 수당, 퇴직금 등)와 기성회비 반환금, 기성회비 반환소송 등 기성회 운영비를 위주로 반영

## Ⅲ. 사업유형별 지침

### 1 기본사업비

#### 1 인건비

##### 교직원 연구보조비

- 직원(기성회 재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지원보조비 일체

##### 기성회직 보수

- 기성회직원의 인건비는 2015년도 국가공무원 보수(3.8% 인상)에 준하되 본교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전북대학교 지부간에 체결된 임금협약에 의하여 책정

##### 객원 및 석좌교수 등

- 계약에 의한 급여 및 최저임금 반영
  - \*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퇴직충당금 반영, 연차적 확보계획에 따라 적정 퇴직적립금 계상

##### 계약직 보수

- 편성방법
  -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기관(부서)에서 수입대체경비로 채용하는 기존의 무기계약직원 및 기간제 계약직원에서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되는 무기계약직원의 보수 및 4대보험료,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퇴직충당금 등은 수입대체경비 운영기관 자체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 수입대체기관 및 산학협력단 등 기성회회계 외 타 회계에서 채용직원에 대한 계약직 보수(4대 보험료 및 퇴직충당금)는 자체 예산에 편성 지급

- 지급단가 : 국가공무원 보수 및 물가인상률 등 반영  
→ 총무과 자체 규정에 따라 반영

#### 일용잡급

- 2015년도 사업 종목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에 의거 노임단가 기준적용

## 2 운영비

- 운영비는 기성회비 반환소송 및 기성회 운영에 관한 비용만 반영

## 3 보조금

- 2014회계연도 기성회계에 편성 및 집행 후 이월금이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

## 4 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는 1:1 대응경비로 세입·세출액 동일 계상
- 수입대체경비 인건비는 위 1.인건비에 준하여 편성 및 집행

## 5 예비비

- 세수 부족으로 미편성

## 6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 없음



## IV. 기성회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 1 세입 과목구분

과 목		현 행 내 역	비 고
회 비	회 비	1.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 2. 독지가의 찬조금	회비수입의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 적용 (예, 3년 평균 등록학생 수 등)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보조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타회계의 보조금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	1. 각종 과정 운영에 따른 수익자 부담 등 2. 기숙사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4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숙사는 제외할 수 있음)	
잡수입	잡수입	1. 이자수입 2. 과년도수입 3. 기타수입	
세입총계			

## 2 세출 과목구분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인건비	보 수	기성회에서 채용하는 상용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 수당포함)	인건비성 경비는 다른 과목에 편성할 수 없음
	수 당	강사수당	
	연 구 보조비	1.법령, 훈령, 학칙, 회칙 또는 학교자체규정에 공무원 급여 및 이에 준하는 기성회 직원 급여 이외에 월/분기/반기/연액 등으로 교직원(단, 공무원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지원하는 연구 보조비 및 연구지원보조비 일체 2.시간강사 교재연구보조비 3.교원 및 시간강사에게 지급하는 국고연구보조비	
운영비	일 용 잡 급	기성회에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목에 편성
	학 교 운영비	<b>【일반수용비】</b> 1.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가.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나.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소모성 물품 구입비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5.간행물 등의 구입비	
			재물조사대상물품은 자산취득비목에 계상 도서관용 등 자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p>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p> <p>6.비품수선비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p> <p>7.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가.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 환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나.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등 다.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라.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직송료(버스회수권대)</p> <p>8.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가.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나.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다.현상모집의 상금, 학교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p> <p>9.공고료 및 광고료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p> <p><b>【공공요금 제세】</b></p> <p>1.공공요금 가.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나.철도화물 운송요금 다.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p>	<p>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목에 계상</p> <p>철도운송료는 공공요금 비목에 계상</p> <p>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p>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p>2.제 세                      가.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나.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                      다.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전세금 및 기타 보관금                      라.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및 보험료환부금</p> <p><b>【피복비】</b>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p> <p><b>【급량비】</b>                      1. 학생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경비                      가.주식비                      나.부식비                      다.주식 및 부식에 필요한 연료비·소모품구입비 등</p> <p><b>【특근매식비】</b>                      경상사무를 위한 특근차 및 각종훈련실습에 참여하는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매식비</p> <p><b>【운영수당】</b>                      1.시험수당, 위원회참석수당                      2.일·숙직수당                      3.자체교육강사수당</p> <p><b>【임차료】</b>                      1.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등의 임차료                      2.장소, 건물등의 일시 임차료                      3.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p>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p>4.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p> <p><b>【연료비】</b>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p> <p><b>【시설장비유지비】</b> 1.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2.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등 포함) 유지비 3.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p> <p><b>【차량선박비】</b> 1.차량 및 선박 유류대 2.차량정비 및 선박정비 유지비 3.차량 소모품비, 선박용품 및 선구비 4.자가운전제실시에 따른 차량운영비</p> <p><b>【재료비】</b> 1.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가.소모성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나.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p>	<p>이륜차중 1,200cc 이상은 차량·선박비목에 계상</p> <p>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목에 계상</p> <p>물품관리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자산취득비목에, 수선에 사용되는</p>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여 비	<p>2.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p> <p>3.광물질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p> <p>4.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p> <p>5.사료구입비</p> <p><b>【학생활동지원】</b></p> <p>1.학생의 교육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p> <p><b>【학교행사지원】</b></p> <p>1.학술대회 등 학교주관 행사경비 지원</p> <p><b>【기타운영비】</b></p> <p>가.의무실, 양호실 등 자체 의료시설의약품,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p> <p>나.공상치료비</p> <p><b>【국내여비】</b></p> <p>1.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교직원의 국내출장 여비</p> <p>2.학교의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p> <p>3.학생의 현지학습(견학, 답사, 조사, 훈련)을 위한 실소요 여비</p>	<p>부속품등은 시설장비 유지비목에 계상</p> <p>교직원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는 계상할 수 없음.</p> <p>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감독을 위한 여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목에 계상</p>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경 상 이전비	<p><b>【국외여비】</b></p> <p>1.국외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 2.학교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p> <p><b>【외빈초청여비】</b>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p> <p>업 무 추진비</p> <p>1.학교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잡비 가.접대경비 나.해외출장 지원경비 다.정례회의 경비 라.각종행사 및 학생지도에 따른 다과 및 식사대(세미나 포함) 2.일반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p>	
	<p>복 리 후생비</p> <p>기성회직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p> <p>1.정액급식비 2.가계보조비 3.효도휴가비 4.연가보상비 5.체력단련비</p>	
	<p>연 구 개발비</p> <p>1.학교사업의 지속적인 연구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전산조직운영을 위한 S/W 개발 및 범용 S/W 구입비</p>	
	<p>보상금</p> <p><b>【보상금】</b></p> <p>1.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2.장학금 3.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p>	<p>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목에 편성</p> <p>교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p>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4.기성회직 법정보험 부담금	
	<b>【포상금등】</b>	
	1.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대상인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수인 경우에 한함)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목에 편성
	2.해외파견교직원의 학자금	
퇴 직 충당금	기성회직 퇴직충당금	
배상금	1.손해배상금 2.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징발보상금 4.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5.과오납반환금, 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출연금	학칙 또는 교내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장학단체 등에 대한 출연금	
차입금 이 자	1.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2.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수수료	
자본지 출경비	토 지 매입비	
	1.학교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2.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시설비	
	1.건물, 공장,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의 신설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전력소모 및 전신전환,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 경비 3.토지정비공사비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시 설 부대비	<p>4.조립, 육림에 필요한 경비</p> <p>5.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운반비등 기타 제경비</p> <p>6.전신전화 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p> <p>7.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p> <p>1.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환경영향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p> <p>2.주요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p> <p>3.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p> <p>4.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p> <p>5.대수선 또는 재산취득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p> <p>가.공사시공계획 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p> <p>나.공사용 기계, 물자 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p> <p>다.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제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등)</p> <p>라.공고료, 시험 및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p> <p>마.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p> <p>바.공사계약수수료와 공사 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p>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자 산 취득비	사.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아.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1.학교교육에 직접 수요되는 건물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등의 취득비  2.물건의 성질 및 형성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 집기류  3.도서관용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4.정수관리 대상이 되는 정수물품 구매비  5.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상환금	1.국내차입금의 상환금 2.해외차입금의 상환금	
과년도 지출	과년도 지출	이월되는 채무확정액의 지출
잡지출	잡지출	품목별 과목해소로 지출하기 곤란한 제경비
예비비	예비비	
이월금	이월금	다음연도 이월금
세출총계		